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	보도	'21.6.23.(수) 석간	배포	

책 임 자	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고 상 범(02-2100-2660)	담 당 자	송 희 경 사무관 (02-2100-2673)
	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 이 주 현(02-3145-6700)		송 현 철 팀 장 (02-3145-6710) 진 시 원 수 석 (02-3145-6716)
	금투협 자산운용부문대표 나 석 진(02-2009-9016)		박 상 철 부 장 (02-2003-9250) 김 유 석 부부장 (02-2003-9251)

제 목 :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· 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 예고

- 자본시장법 개정('21.4월 공포, '21.10.21. 시행)에 따라,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(시행령·감독규정) 개정안을 예고합니다.**
 - 예고기간 : '21.6.23.~8.2.(40일간) → 시행시기 : 법시행일과 동일(10.21.)
- 설명회 개최를 통해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업계 의견수렴과 개정안 시행에 대비한 실무준비를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.**

1 | 개 요

-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('21.10.21. 시행)에 따라,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을 예고합니다.

* 예고기간 : '21.6.23.~8.2.(40일간) / 시행시기 : 법시행일에 맞춰 '21.10.21. 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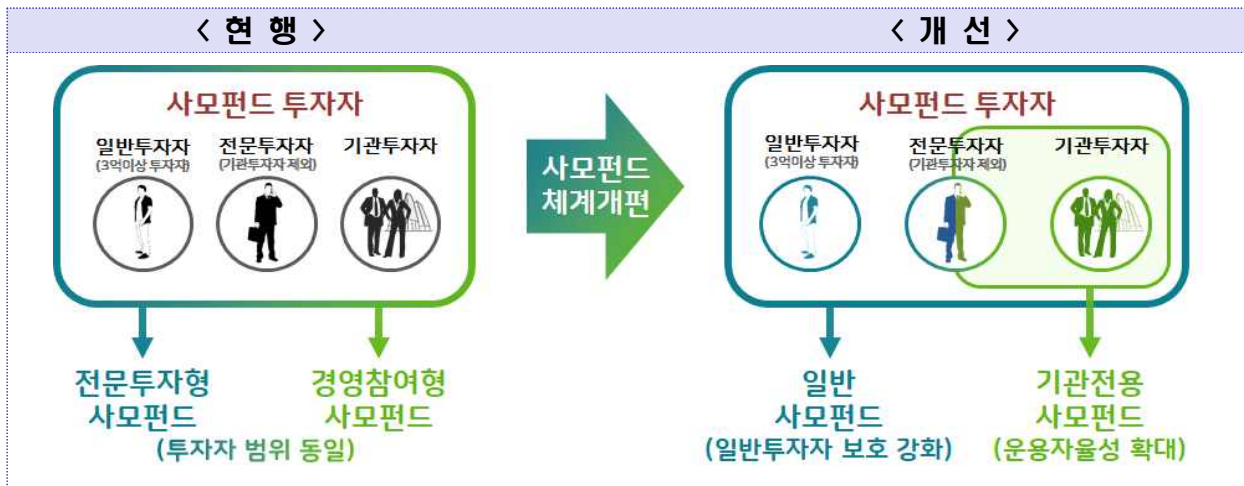
- 법·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일련의 사모펀드 제도개선이 마무리되고,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개선됩니다.
- 금융위는 국회 법개정 취지 등을 충실히 고려하여 사모펀드 시장이 본연의 “신뢰받고 건전한 모험자본 시장”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.

□ 사모펀드 제도의 큰 틀이 바뀝니다.

- 그동안 “운용목적”에 따라 전문투자형·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가 앞으로는 “투자자”를 기준으로 “일반 사모펀드”와 “기관전용 사모펀드”로 분류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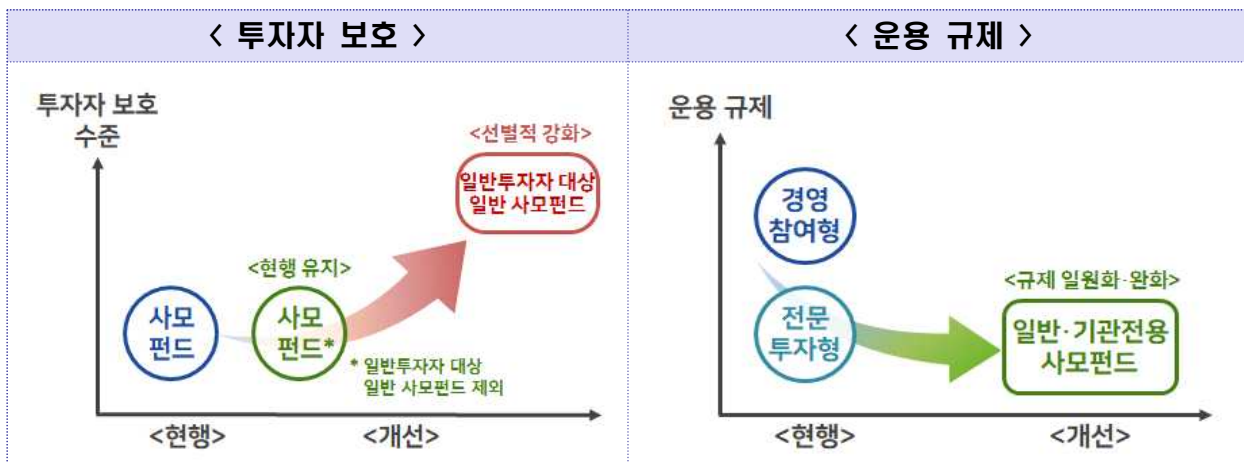
※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

- [일반 사모펀드] **적격투자자**(전문투자자 + 3억원이상 투자자) → 일반·개인 투자가능
- [기관전용 사모펀드] **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투자자** → 일반·개인 투자불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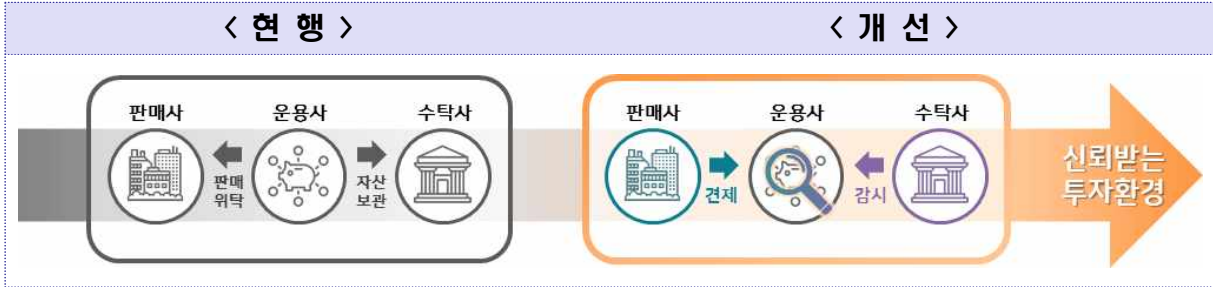
□ 투자자 보호는 강화되고, 운용 효율성은 높아집니다.

- 투자자 보호장치가 “일반투자자”를 대상으로 선별적 강화되고, 그동안 이원화되어있던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“일원화·완화”되어 운용 효율성이 높아집니다.



(1) 일반투자자 보호장치 강화

※ 제도개편에 따라 일반투자자(3억원 이상 투자자)는 “일반 사모펀드”에만 투자 가능
 ⇨ 『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일반 사모펀드』에 대해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



□ 운용사의 사모펀드 설정·운영에 관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됩니다.

- 비시장성 자산* 50% 초과시 개방형펀드가 금지되고, 중요사항*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의무가 신설됩니다.

* 거래소 시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자산. 단, 개방형펀드·파생결합증권·우량채권 등 제외

* 투자전략 등 고려시 고난도펀드, 전문투자자펀드(전문투자자만 투자), 경영참여목적 펀드(바이아웃 펀드), 금전대여 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·설명서 기재
 ⇨ 수탁사·판매사·투자자에게 알리는 효과 • 전문투자자 대상펀드에도 공통 적용

- 사모펀드 외부감사,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의무 및 환매연기시 수익자총회 의무가 신설됩니다.

구분	세부내용	법	시행령·감독규정	관련조문
설정 단계	개방형펀드 설정 제한	§249의8②	비시장성 자산 정의, 비중	승 §242 規程 §7-21-22
	집합투자규약 기재사항	-	의무적 기재사항 추가	規程 §7-8
	핵심상품설명서 작성	§249의4	설명서 기재사항	승 §271의6① 規程 §7-41의3
운영 단계	자산운용보고서 교부	§249의8②	보고서 기재사항 추가	승 §92 規程 §4-66
	외부감사 의무화	§249의8②	-	
	환매연기시 수익자총회	§249의8②	-	

□ 판매사의 판매절차 강화 및 운용사 견제의무가 도입됩니다.

-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의 집합투자규약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, 투자권유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이용*·교부해야 합니다.

* 판매사는 운용사 합의 하에 중요한 사항을 발췌·표시한 요약자료로 투자권유 가능

- 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판매사가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 관점에서 사후 확인합니다.
- 설명서를 위반한 불합리한 펀드운용을 발견할 경우, 운용사에 시정요구하고 운용사 불응시 금감원에 보고합니다.

구분	세부내용	법	시행령·감독규정	관련조문
투자 권유	핵심상품설명서 내용 확인	§249의4③	판매사 확인사항	승 §271의6③
	투자권유시 핵심상품설명서 이용·교부	§249의4④	교부면제 대상, 교부방법	승 §271의6④~⑥
판매 이후	불합리한 운용여부 확인	§249의4⑤	운용행위 확인방법	승 §271의6① 規程 §7-41의3
	불합리한 펀드운용 발견시 운용사에 시정요구	§249의4⑤	-	승 §92 規程 §4-66
	운용사의 시정요구 불응시 금감원 보고·투자자 통보	§249의4⑥	보고·통보 사항	기관·임직원 제재

□ 수탁사의 운용감시 및 자산대사 의무가 신설됩니다.

- 수탁사(은행, PBS 증권사)는 운용지시의 법령·규약·설명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, 불합리한 운용지시에 대해 시정요구해야 합니다.
- 수탁사의 운용감시 대상은 일반투자자가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모든 일반 사모펀드*입니다.
 - *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일반 사모펀드(A) 및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펀드(A + 공모펀드)로부터 투자받는 일반 사모펀드
- 수탁사가 보관·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펀드별 자산명세와 비교·대조하는 자산대사 의무가 법제화됩니다.(공·사모펀드 공통)
-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을 제공하는 PBS(전담중개업무) 증권사에 대한 레버리지 위험수준의 평가·관리의무가 도입됩니다.

구분	세부내용	법	시행령·감독규정	관련조문
운용 감시	수탁사의 운용지시 감시	§249의8②	운용감시 대상 사모펀드	승 §271의11
	수탁사의 자산대사 의무	-	자산대사 방법·주기	승 §269 規則 §24
	PBS증권사의 위험평가·관리	§77의3④	-	

(2) 사모펀드 운용의 효율성 제고

※ 법개정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은 위험관리능력이 인정되는 “기관투자자” 대상으로만 펀드설립 가능 ⇨ 『기관전용 사모펀드』 운용규제를 일반 사모펀드 수준으로 완화



□ 사모펀드간 이원화되어있던 운용규제를 “일원화·완화”하여 일반·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 효율성이 제고됩니다.

○ 일반 사모펀드의 10%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가 허용* 되고

* 단, 상출제한집단 계열 펀드 및 상출제한집단 계열 금융사가 주요 LP인 경우 제외

-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행과 달리 일반 사모펀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*됩니다.

* (현행) 의결권 있는 주식 10% 이상 취득 의무 및 6개월 이상 지분보유 의무 등
 → (개선) 지분투자자외 메자닌 투자, 금전차입, 법인대출, 부동산 투자 등 가능

○ 다만, 금융회사(은행·보험 등, 금투업자·신기사 제외)가 운용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재의 운용방법을 유지합니다.

구분	세부내용	법	시행령·감독규정	관련조문
운용 규제 일원화	일반 사모펀드의 10% 초과 의결권 행사 허용	§249의7⑥	-	-
	기관전용은 일반 사모펀드 운용방법을 준용(운용 일원화)	§249의12①	-	-
	금융회사(금투업자 등 제외) GP의 운용방법 제한	§249의14②	운용방법 제한	승 §271의20 規程 §7-41의13

□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(명확화·완화)하였습니다.

○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를 400%로 일원화(현행 전문투자형 400%, 경영참여형 10%(SPC 300%))하되,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RP매도·공매도를 레버리지로 합산하도록 하였습니다.

○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(SPC) 활용을 허용하되, 운용규제 회피 목적의 유사 SPC 설립·이용* 행위는 제한하였습니다.

* (예시) 펀드자금으로 법인 설립 및 해당 신설법인을 통해 사실상 자산운용 등

○ 금전대여의 방법으로 펀드 운용시 개인대출 등*을 금지하고, 투자위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를 기관투자자 등으로 제한하였습니다.(現 「금전대여 가이드라인」의 내용 반영)

* P2P, 대부업자 등과 연계한 개인대출 및 유흥업 등 사행업종 대출도 금지

○ 사모투자재간접펀드를 “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일반 사모펀드”에 투자하는 펀드로 재정의하였습니다.

* 현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만 투자하는 형태로 도입('17년)되어 있는 점 고려

○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존속기한(15년)을 폐지하되, 경영참여 목적투자*인 경우 15년내 지분처분 의무를 도입하였습니다.

* 10% 이상 지분투자 +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(①임원의 임면, ②조직변경 등 주요 경영사항에 지배력 행사, ③지분의 분산도로 보아 지배력 행사 가능)

※ 경영참여 목적 사모펀드 구분기준 및 적용사항

▶ (구분기준) 펀드 설정·설립 보고서, 집합투자계약(정관) 및 설명자료에 명시된 투자 전략이 “경영참여(10% 이상 지분투자 + 사실상 지배력 행사)”인 경우 해당

※ 해외에서도 “바이아웃 펀드”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투자자 모집

▶ (적용사항) 경영참여목적 펀드의 경우 ①투자시점부터 15년내 지분처분 의무, ②사모투자재간접펀드의 재간접투자 금지, ③설정·설립 즉시보고 적용

구분	세부내용	법	시행령·감독규정	관련조문
운용 방법 정비	사실상 차입을 레버리지 비율 계산시 합산	\$249의7①	사실상 차입 구체화	승 \$271의10①~③
	개인대출 등 금지	\$249의7②	P2P 등과 연계한 개인대출 금지	승 \$271의10⑧~⑨
	금전대여 펀드의 투자자 제한 및 예외	\$249의7②	금전대여 펀드 투자자 범위 등	승 \$271의10⑩~⑫
	경영참여목적 투자인 경우 15년내 지분처분 의무	\$249의7⑤	경영참여목적인 사실상 지배력 요건 구체화	승 \$271의10⑳

(3) 사모펀드 시장질서 확립

□ 일반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도모합니다.

- ① 부실운용사 신속 퇴출을 위해 등록의 직권말소 도입 및 직권 말소된 등록업에 대한 재진입을 일정기간(5년간) 제한합니다.
- ②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한 운용행위와 자사펀드의 금전대여 과정에서 대출 중개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행위를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합니다.
- ③ 투자전략이 경영참여투자인 경우, 일정요건* 해당시 설정·설립 즉시 보고의무가 신설됩니다.(원칙 : 2주 이내 사후보고)

* 같은 상출제한집단 계열회사가 30% 이상 투자하는 경우 등 /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설정·설립 즉시 보고의무를 동일하게 적용

구분	세부내용	법	시행령·감독규정	관련조문
일반 사모 시장	등록의 직권말소 도입	§20의2	직권말소 이후 5년내 재진입 제한	승 §21, §271의2
	불건전 영업행위 추가	-	핵심상품설명서 위반 등	승 §87
	설정·설립 즉시 보고사항	-	즉시보고 요건 구체화	승 §271의9

※ 그 밖에 인가·등록취소 사유를 명확화하여 반영

□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(GP) 감독권을 강화합니다.

- ① GP 상시감독이 가능하도록 변경등록 의무*를 마련하고, GP에 대한 금융당국의 명령·검사권을 신설하였습니다.
- ② GP가 2명이상 투자운용전문인력*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, 운용 규제 완화에 대응한 필수적인 영업행위 규칙**을 신설하였습니다.

* (안) 2년이상 운용경력(GP는 3년) 또는 3년이상 금융회사 경력 & 협회 교육이수

** 투자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의 펀드 운용행위 금지(기존펀드 유예기간 3년) 등

구분	세부내용	법	시행령·감독규정	관련조문
기관 전용 시장	GP 변경등록 의무 신설	§249의15⑧	변경보고 예외(자구수정 등)	승 §271의13
	GP에 대한 명령·검사권	§249의14⑫·⑬	-	-
	투자운용전문인력 신설	§249의15①	전문인력 요건	規程 [별표] 2의3
	영업행위 규칙 신설	-	운용·실행업무의 겸직금지, 무자격자의 펀드운용 금지	승 §271의21

(4) 모험자본 공급기능 활성화

- **사모펀드 투자자수를 49인 → 100인으로 확대**합니다.
(단, 일반투자자수는 49인 이하 유지)

※ 사모펀드 투자자수 산정 방식



- 주로 전문투자자의 일반 사모펀드 투자기회가 확대되고, 사모 운용사의 펀드조성도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※ 단, 동일증권 판단기준(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·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, 시행령 §129의2) 등 공모규제는 엄격히 적용

- **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자율성이 제고**됩니다.

- 법개정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전문성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“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자”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.

※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(안)

法 §249조의11⑤ 유한책임사원은 개인(외국인, 해당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을 제외한다)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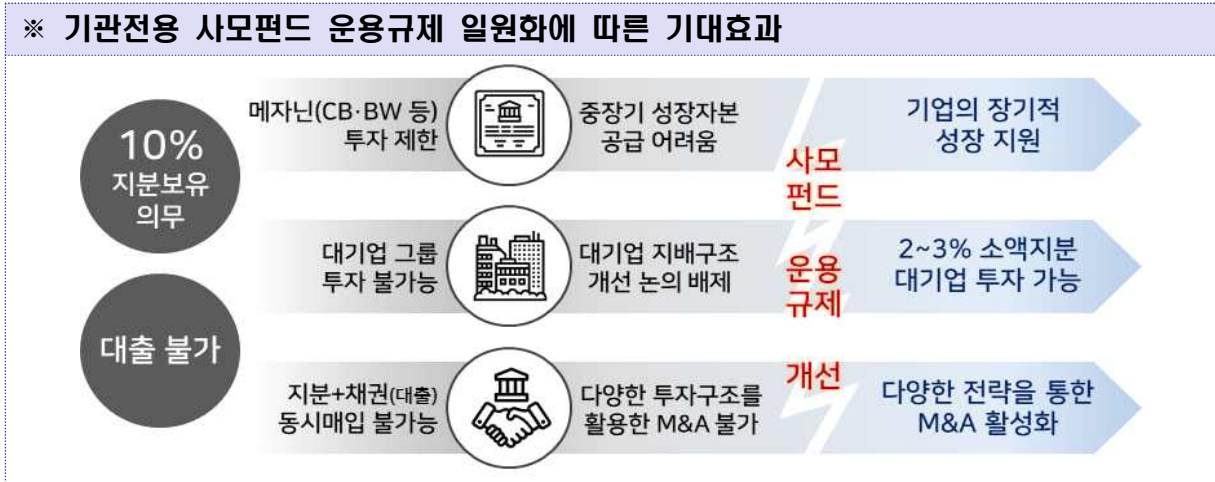
1.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
2. 그 밖에 전문성 또는 위험감수능력 등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

- 전문투자자로서 전문성·위험관리능력이 인정되는 투자자

기관투자자	국가, 한국은행, 금융회사, 특수법인(예보·캠코 등)
준하는 자	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·공제회, 기관전용 사모펀드
	주권상장법인(코넥스 제외) 중 일정요건*을 갖추고 협회에 등록된 자 * 법인전문투자자 수준의 투자경험(금융투자잔고 100억(외감법인 50억) 이상)
	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외국인(개인 포함)

- GP 임원·운용인력(1억원 이상 시딩투자만 가능)

- 한편, 투자자 제한에 따라 현행의 엄격한 운용규제가 폐지되고, 영업행위 규제도 최소화되어 운용 자율성이 강화됩니다.



구분	세부내용	법	시행령·감독규정	관련조문
규제 합리화	투자자수 확대	§9 ¹⁹	-	-
	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	§249의11	투자자 범위 구체화	승 §271의14

4 추진일정 및 향후계획

- 법률 시행일자('21.10.21.)에 맞춰 시행령·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.

* 추진일정(안) : 입법예고('21.6.23.~8.2.) → 규제심사·법제처심사('21.8~9월) → 국무·차관회의 상정·의결 및 시행('21.10월)

- 입법예고 기간('21.6.23.~8.2, 40일) 중 설명회를 통해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업계 의견수렴 및 개정안 시행준비를 지원하겠습니다.

※ 입법예고前 업계 간담회 既 개최(6.10.) : 개정안 안내 및 사전 의견수렴

- 금감원·협회도 업계 준법교육 등을 통해 개정내용을 안내하고, 금감원 보고서식*도 신속히 개정·안내하는 등 업계의 실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.

* 사모펀드 설정·설립보고서, 핵심상품설명서, 자산운용보고서, 영업보고서 등

- ※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(www.fsc.go.kr / 정책마당 / 법령정보 / 입법예고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 금융 용어 설명 >

- **기관전용 사모펀드** : 전문성·위험관리능력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자가 제한된 사모펀드(법 §9⑩1.)
 - *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업무집행사원(GP, 非금융투자업자)이 설립·운영
- **일반 사모펀드** :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**적격투자자**(전문투자자 + 최소투자금액(3억원) 이상 투자하는 일반투자자)가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(법 §9⑩2.)
 - * 일반 사모펀드는 사모운용사(금융투자업자)가 설정·운영
- **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** : **일반투자자**(전문투자자가 아닌 자)가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. 개정법령은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에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도입
 - * 핵심상품설명서 교부, 자산운용보고서 교부, 외부감사, 판매사·수탁사의 운용감시 등

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◆ 명칭만 변경된 조문*은 표기하지 않음

- *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→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
- ②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→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
- ④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→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
- ⑤ 대차대조표 → 재무상태표

자본시장법 시행령		금융투자업 규정	
개정조문	개정내용	개정조문	개정내용
제21조	· 직권말소된 경우, 투자자문업, 투자일임업 재진입 제한		
제68조	·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한 경우 고난도금투자상품 설명서 교부제외		
제80조	· 사모투자재간접펀드를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일반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로 재정의		
제87조	· 불건전영업행위 추가 * ① 핵심상품설명서 위반 운용행위 ② 자사펀드의 금전을 대여받은 자로부터 중개수수료 등 수취 행위	제4-63조	· 제11호 삭제(영 §87로 이동)
제92조	· 자산운용보고서 정비	제4-66조	· 자산운용보고서 정비
		제7-8조	· 집합투자규약 기재사항 추가
제242조	· 비시장성 자산 50% 초과시 폐쇄형 펀드 설정 의무 도입	제7-21조	· 50% 비율 규정
		제7-22조	· 비시장성 자산 정의
제262조 제262조의2	· 기준가격 계산·공고(§262) 조문을 계산(§262)·공고(§262의2)로 분리 * 법개정으로 사모펀드에도 기준가격 산정의무가 도입된 점 반영		
제269조	· 집합투자재산 자산대사 의무	[규칙] 제24조	· 자산대사 주기 등
제271조의2	· 직권말소된 경우, 사모집합투자업 재진입 제한(제21조와 내용 동일)	제7-41조의2	·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대주주 요건
제271조의6	· 판매사의 운용행위 감시의무 등 * ① 핵심상품설명서 기재사항 ② 핵심상품설명서 변경의무 예외 ③ 판매사의 설명서 검증사항 ④ 핵심상품설명서 교부 예외대상 ⑤ 핵심상품설명서 교부방법 ⑥ 요약 투자권유 문서 포함사항 ⑦ 판매사의 운용감시 방법 ⑧ 불합리한 운용 적발시 통보사항 ⑨ 운용사 이의신청 등 ⑩ 투자광고 대상 기준	제7-41조의3	· 판매사의 운용행위 감시의무 * ① 핵심상품설명서 기재사항 ② 핵심상품설명서 변경제공 예외 ③ 요약 투자권유 문서 포함사항 ④ 투자권유의 방법

자본시장법 시행령		금융투자업 규정	
개정조문	개정내용	개정조문	개정내용
제271조의9	·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의 설정·설립 즉시보고 사유	제7-41조의6	· 일반 사모펀드 설정보고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
제271조의10	· 사모펀드 운용규제 전면개정 * ① 레버리지 비율 산정 관련 ② 사실상 차입 구체화 ③ 금전대여 금지 대상 ④ 일반 사모펀드 영업보고서 기재사항 ⑤ 사실상 지배력 행사 구체화		
제271조의11	· 일반투자자로 보는 펀드		
제271조의13	· 기관전용 사모펀드 설립 보고사항 추가		
제271조의14	·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 등		
제271조의15	· 삭제(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규제)	제7-41조의10	· 삭제(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규제)
제271조의16	· 기관전용 사모펀드 영업보고서 기재사항		
제271조의17	· 삭제(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규제)	제7-41조의11	· 삭제(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규제)
제271조의18	· 삭제(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규제)	제7-41조의12	· 삭제(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규제)
제271조의19	· 투자목적회사 운용방법도 일반 사모펀드 운용방법을 준용		
제271조의20	· 금융회사(은행·보험 등/ 금투업자, 신기사 등 제외)인 GP 운용방법 →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방법(법 제271조의12, 영 제271조의 15·17·18)와 동일	제7-41조의13	· 금융회사(은행·보험 등/ 금투업자, 신기사 등 제외)인 GP 운용방법 →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방법(규정 제7-41조의10 11·12)와 동일
제271조의21	·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운용전문인력 요건을 금융위가 정하도록 함	제7-41조의14	·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운용전문인력 요건 신설
제271조의25	· 공정거래법상 LP 정보공시 제외 특례를 상출제한기업집단 →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		
제373조	· 경영개선명령 위반시 인가취소 등	별표 2의3	· 기관전용 사모펀드 인력요건
별표 10	· 기관전용 사모펀드 및 업무집행사원 처분사유	별표 3	· 대주주의 요건
별표 20	· 금감원 위탁권한 범위	별지 2의3	· 업무집행사원 등록 신청서
별표 22	· 과태료 부과기준		